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2. 9 선고 2021가단812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1. 6.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21. 6. 10. 접수 제127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이정엽

부 동 산 의 표 시

1. [토지] 전라남도 고흥군 대 175 m²
2. 전라남도 고흥군 대 102m²
3. 전라남도 고흥군 전 144m²
4. 전라남도 고흥군 전 1,795m²
5. 전라남도 고흥군 임야 13,265m²

-이 상-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실 채권의 매입, 매각업등을 하면서 소외 ㈜D가 소외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C의 형입니다.

나. 소외 C이 갚지 않은 소외 ㈜D 사용대금에 대하여 원고는 2021. 04. 21. ㈜D와 자산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외 C에게 2021. 06. 15.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이 채권에 대한 양수인이 되었습니다.

다. 위의 소외 C은 아버지 망 E의 사망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피고와 그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한 자입니다.

2. 피고등의 사해행위

가. 피고와 소외 C의 관계

피고는 소외 C의 형으로 가족관계인 동생인 소외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나. 소외 C의 무자력

소외 C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2분의 1분지가 유일한 재산으로써 현재 원고가 양수받은 소외 ㈜D의 신용카드 채무금 및 일반 채무가

있어,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 취소권에 기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소외 C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원고의 양도인 (주)D에 연체금이 존재하였으며 2017. 12. 28. 특수채권에 편입되어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소장 접수일 기준(2021. 08. 17.) 금 12,583,526원(내역-원금잔액 금 6,294,980원 + 인수전 이자 금 5,724,482원 + 인수후 이자 금 564,064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 사해행위의 성립

(1)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2) 소외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에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21. 06. 10.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원칙적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외 F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이고,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亡 E에서 채무자 C에게로)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4. 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른 것입니다.

변경 후 청구원인

1. 당사자관계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로부터 소외 C(이하 'C' 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법인입니다.

2) 피고는 C의 형제로, 소외 망 E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1) C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D와 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기한이익의 상실하였습니다.

2) 이후 소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A는 2021. 4. 30.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 위 채권을 원고에게 채권에 관한 일체의 지위와 채권에 수반되는 모든 권리를 최종적으로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2021. 8. 17.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금 12,583,526원(내역-원금잔액 금 6,294,980원 + 인수전 이자 금 5,724,482원 + 인수후 이자 금 564,064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사해행위 및 C의 무자력

1) 위와 같이 C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형제인 피고와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2) 우리법원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1) 우리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C과 피고는 형제로써 피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충분히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5. 원상회복의 방법 : 원물반환

1)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 6.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하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홍등기소 2021. 6. 10. 접수 제1270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로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6. 별지목록 추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이 법률적 사해행위일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홍등기소에 문서송부촉탁을 하였으며, 이에 회신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추가로 협의분할 상속이 이루어진 부동산을 확인하여 별지목록 부동산을 추가합니다.

7. 결론

위와 같이 피고와 C의 협의분할약정은 원고와 같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